

이 보도자료는 2020. 9. 1.(화) 14: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전문공보관 박세현

전화 02-530-4780 / 팩스 02-536-5410

보도자료

2020. 9. 1.(화)

제 목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제11조 제1항)
-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제11조 제2항 제3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2020. 9. 1.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한 결과, 아래와 같은 범행을 밝혀 총수 이재용을 비롯한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를 확인하여,
 - 이재용 부회장 및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前실장, 김종중 前전략팀장, B○○ 前 임원, 舊삼성물산의 최치훈·김신 대표이사, 이영호 최고재무책임자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 미래전략실의 장충기 前실차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혐의로 각각 기소하였고,
- 불법합병 은폐를 위한 로직스의 회계부정, 그룹 수뇌부의 위증 등 범행을 확인하여,
 - 이재용 및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김종중, A○○ 前 부사장, 로직스의 김태한 대표이사, C○○ 임원 등을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로,
 - 미래전략실의 김종중과 舊삼성물산의 김신 등을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로 각각 기소하였음

- ▶ 수사팀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이후, 법률·금융·경제·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의 비판적 견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내용과 법리, 사건처리방향 등을 전면 재검토하였음
 - 그 결과, 학계와 판례의 다수 입장, 증거관계로 입증되는 실체의 명확성, 사안의 중대성과 가벌성, 사법적 판단을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성,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부장검사회의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요 책임자 기소에 이르렀음

① 수사 개관

1. 수사착수 경위

- '16년경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15년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되어 배임·자본시장법위반 등 소지가 있고, 제일모직의 핵심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¹⁾의 부정 회계처리도 합병과 연관되어 있다는 다수의 고발이 제기되었음
- 그러던 중 '18. 11. 금융위원회로부터 로직스의 '15년도 회계처리가 분식회계에 해당한다는 고발이 접수되자, 검찰은 관련 사건들을 검토하여 '18. 12.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음

[구체적인 수사착수 경위]

연번	일시	진행 상황
1	'16.~	시민단체 등,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승계 및 분식회계 의혹 제기, 검찰 고발
2	'17. 4.~12.	금감원, 심사감리 진행 - 14년 거짓공시, 15년 분식회계
3	'17. 12.~18. 4.	금감원, 정밀감리 ²⁾ 전환 - 14년 거짓공시, 15년 분식회계
4	'18. 5. 1.	금감원, 조치예정사항 사전통지 - 김태한 대표 등 검찰 고발
6	'18. 7. 12.	금융위, 1차 검찰 고발 - 14년 거짓공시
7	'18. 8.	공익 제보자, 금감원에 로직스 내부 보고문건 제출
8	'18. 11. 21.	금융위, 2차 검찰 고발 - 15년 분식회계

2. 주요 수사경과

- '18. 12. 로직스, 에피스, 사업지원TF(미래전략실 후신) 등 압수수색
- '19. 3. 삼성물산, 회계법인 등 압수수색
- '19. 5.~6. 증거인멸 혐의 포착,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8명 구속기소
* 사업지원TF 부사장 3명, 로직스·에피스 임직원 5명 등 1심 전부 유죄 선고(3명 실형), 현재 항소심 계속 중

1) 이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에피스', 미래전략실은 '미전실', 제일모직은 '모직', 삼성물산은 '물산', 삼성전자는 '전자' 등 표현을 병용

2) 공시자료에 근거한 '심사감리' 결과, 회계기준 등 법규위반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정밀감리'로 전환하여 조사 진행

- '19. 7. 20. 로직스 대표 김태한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 '19. 8. 이재용 뇌물공여 등 국정농단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 '19. 9. 국민연금, KCC 등 압수수색
- '20. 5. 26.~29. 이재용 부회장 2회 조사
- '20. 6. 9. 이재용, 최지성, 김종중 구속영장 기각
- '20. 6. 26.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이재용, 김종중, 물산), 불기소 권고
- '20. 7.~8.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 중앙지검 부장검사회의 개최 등
- '20. 9. 1. 이재용 등 관련자 11명 불구속 기소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19. 8. 29. 선고)은 '승계작업'의 정의를 명시한 다음, 이 사건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은 이재용을 위한 승계작업의 일환으로서, 그룹 총수를 보좌하는 미래전략실이 주도하여 추진한 것임을 명백히 인정하였음

* 또한, 위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재상고심('20. 6. 11. 선고)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주도하여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합병을 추진하였고, 대통령과 최서원에게 이 사건 합병 등 승계작업에 대한 지원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사실 확정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승계작업이란 '이재용이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가리킨다. 이것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을 양적·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와 제일모직 주식회사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제일모직 사이의 합병,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추진,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 추진은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현안들이다.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수사대상자, 압수물 등 규모

- 이재용 등 삼성그룹 관계자, 외부 자문사, 주주·투자자, 관련 전문가 등 약 300명에 대하여 860회 상당 조사 및 면담 진행, 서버·PC 등에서 2,270만 건 (23.7TB) 상당의 디지털 자료를 선별하여 압수·분석

* 증거인멸 사건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으로 로직스 공장 바닥, 에피스 직원의 집 창고 등에 은닉된 다량의 서버,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을 비롯하여, '11~'12년 로직스·에피스 설립 당시부터 '15년 모직-물산 합병 및 로직스 회계처리 시점까지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수의 삼성 내부 문건, 이메일 등 증거 확보

2. 피고인(11명)

- 이재용 (52세, 부회장, 삼성그룹 총수)
- 미래전략실 소속
 - 최지성 (69세, 前 부회장, 前 미래전략실 실장)
 - 장충기 (66세, 前 사장, 前 미래전략실 실차장)
 - 김종중 (64세, 前 사장, 前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 AOO (56세, 前 미래전략실 부사장)
 - BOO (57세, 前 미래전략실 임원)
- 삼성물산 소속
 - 최치훈 (62세,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前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 사내 이사)
 - 김 신 (63세, 삼성물산 상임고문, 前 삼성물산 상사부문 사장, 사내 이사)
 - 이영호 (60세,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 前 삼성물산 최고재무책임자<CFO>, 사내 이사)
- 로직스 소속
 - 김태한 (62세, 로직스 사장)
 - COO (55세, 로직스 임원)

3 주요 공소사실³⁾

1.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이재용, 미래전략실, 삼성물산 소속)

- ▶ '15. 5.~9. 이재용의 최소비용 삼성그룹 승계 및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수년 간 치밀하게 계획한 승계계획안(‘프로젝트-G⁴⁾)에 따라,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재용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舊 에버랜드)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결정·추진
- ▶ 그 과정에서 합병 거래의 각 단계마다 아래와 같이 물산 투자자들을 상대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PB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한 수단·계획·기교 사용, 중요사항의 거짓·부실 기재, 위계 사용 등, 제176조 시세조종)

[이사회 단계 : 합병계약 체결·공표]

- '14. 5. 이건희 회장 와병 이후, 승계계획에 따라 ‘에버랜드 상장 후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긴급 추진, '14. 12. 제일모직(舊 에버랜드) 상장 先 완료
- '15. 3.~4. 물산 주가가 하락하여 모직에 유리한 상황이 형성되자 이재용과 미전실은 구체적인 합병 추진계획을 수립 후 물산·모직에 실행 지시
- '15. 5. 이후 물산은 허위 합병 명분(회사 성장을 위한 자체 경영상 판단)과 이를 뒷받침할 허위 시너지 수치 산출, 주가 기준 합병비율(1:0.35)이 적정하다는 회계법인 보고서 조작
 - ① '15. 5. 26. 물산 이사회는 위와 같은 허위 자료만 제공받은 채, 실제 합병 목적, 합병비율·합병시점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등은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1시간 만에 형식적으로 합병 찬성을 의결한 뒤, 합병계약 체결
 - ② '15. 5. 26. 이사회 직후 합병을 공표하면서 증권신고서 등 공시자료, 보도 자료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합병의 목적, 배경, 효과 관련 허위 정보 유포

3) 구체적인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첨 참고

4) ‘프로젝트-G’의 G는 ‘Governance(지배구조)’의 약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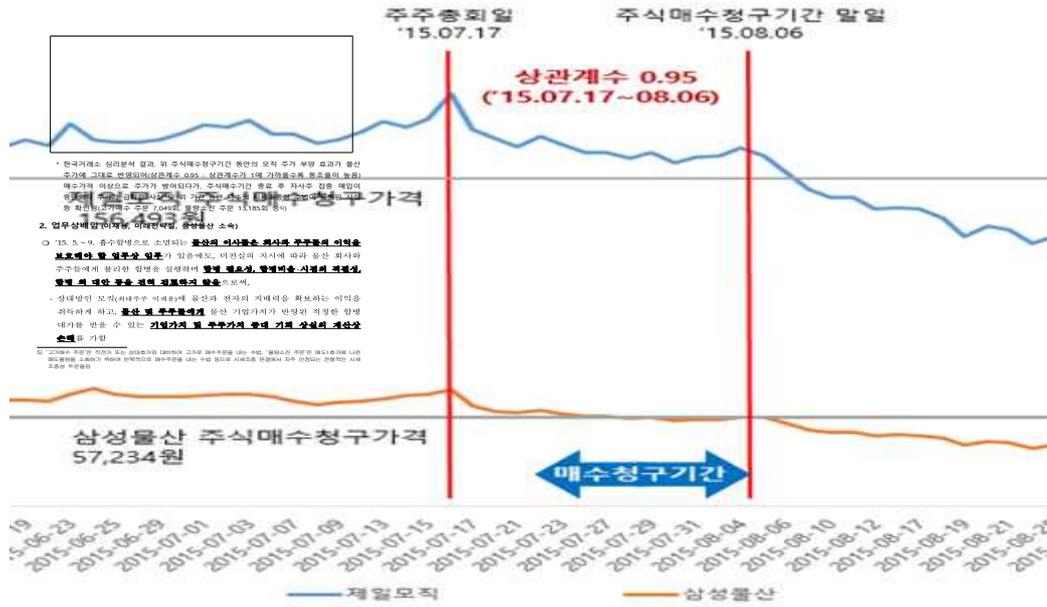
[주주총회 단계 : 의결권 확보]

- '15. 6. 합병 공표 후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재용과 미전실은 합병 찬성표(의결권) 확보를 위해 대응전략 긴급 수립, 아래와 같이 실행
 - ① '15. 6. 10. 물산의 경영상 필요와는 무관하게 찬성표 확보 목적만으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모직 2대주주인 KCC에 경제적 이익 약속하며 물산 자기주식 전량(5.76%) 전격 매각, 이후 거래경위를 가장하며 허위사실 유포
 - * 회사의 자기주식은 원래 의결권이 없는데, 자기주식을 우호세력인 제3자에게 매각 하면 의결권이 부활하여 찬성표를 확보할 수 있는 점 악용
 - ② '15. 5.~7. 모직 가치 저평가 및 합병에 따른 불이익 공개를 우려하여, 각종 증권신고서, 기업설명회 등에서 ① 모직 자회사인 로직스가 에피스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는 사실, ② 합병 이후 신규 순환출자 발생 사실, ③ 모직의 주요 자산인 삼성생명 지분 매각 추진 사실 등 중요 투자위험 정보 은폐·가장
 - ③ '15. 5.~7. ① 주요 해외 주주 및 의결권 자문사 등에 접촉하여 합병 목적·경과·효과 관련 허위 정보 유포, ② 중요 정보를 누락하고 허위 정보를 기재한 설명자료, 공시자료 등을 투자자들에게 유포, ③ 증권회사의 분석 보고서 작성에 부당 개입하여 내용 왜곡, ④ 저명인사의 기고문을 대신 작성 해주는 등으로 합병에 유리한 기사를 보도되게 하여 투자자 의사결정 왜곡
 - ④ '15. 6. 모직 주가 인위적 부양 목적으로, ① 합작사인 바이오젠과의 협의 없이 에피스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 발표, ② 자금조달 방안 등 구체적 계획 없이 에버랜드 인근 개발 계획 발표 등 허위 호재 공표
 - * 위 계획들은 합병 당시 주가부양을 위한 호재로 이용되었으나 합병 이후 모두 취소됨
 - ⑤ '15. 6.~7. ① 물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을 설득하기 위해 허위 정보가 담긴 주주설명자료, 조작된 합병비율 검토보고서 등 제공, ② 불법적인 로비(최서원 승마지원 등 뇌물공여)를 통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유도하여 찬성 의결권 확보
 - ⑥ '15. 6.~7. 물산의 일반 소수·소액주주 의결권 확보를 위해 ① 일성신약 (2.37%)에 대규모 이익 제공 제안, ②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모직 자문사인 삼성증권 리테일(PB) 조직을 동원, 고객 개인정보를 유용하여 찬성 권유 작업

[주주총회 이후 단계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억제]

- '15. 7. 주총 이후 물산 주가가 하락하여 합병 반대 물산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급증으로 인한 합병계약 해제 위험성이 커지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57,234원) 이상으로의 주가 부양을 위해 모직 자사주 집중매입
 - * 물산 주가는 7. 16. 69,300원 → 7. 21. 59,200원으로 급락하여 위 행사가격에 근접
 - * 이재용과 미전실은 '14. 10. 추진했던 중공업-엔지니어링 합병이 주총 통과 이후 반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과다 행사로 결국 무산된 경험이 있는바, 이 사건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계획을 지시·실행
- 합병비율(1:0.35) 고정으로 모직과 물산의 주가가 연동되는 동조효과를 이용한 범행으로, 당시 물산은 이미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KCC에 자사주를 모두 처분하였기 때문에 규정상 자사주 매입이 제한되자 부득이 모직이 자사주를 매입
 - *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자사주 처분 시 3개월 간 자사주 취득을 못하도록 규정
- 자사주 매입계획의 내용으로 '모직 주가 관리를 통해 물산 주가를 매수청구가격인 57,234원 이상으로 유지', '모직의 최저 목표 가격을 특정주가인 17만원으로 산정' 등 '특정 목표 주가 설정·인위적 부양' 전략 포함
- 미전실 지시로 7. 23. 모직은 4,400억 원 상당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였는데, 당시 모직이 보유한 현금성 자금은 약 200억 원에 불과하여, 나머지 매입자금 4,200억 원은 7.7억 원 규모의 이자를 부담하는 단기대출(1개월 단위 기업어음 포함)로 조달해야 하는 등, 자사주를 취득할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음
 - * 모직 자금 부족으로 합병 이후 피합병회사인 舊 물산의 자금으로 대출원금과 이자 변제
- 주식매수청구 기간 중 10일 동안(7. 24.~8. 6.) 모직 자사주 172만주 2,902억 원 상당(공시된 매입 물량의 약 70%)을 집중 매수하는 등 매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행사가격 이상 주가를 유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억제
- 모직의 자사주 집중매입은 모직·물산 주가 모두에 영향을 미쳤는바, 물산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억제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부정행위 수단 등을 사용한 것이므로 모직 주가에 대한 시세조종인 동시에 물산 주주들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성립

[주식매수청구 기간 전후 모직-물산 주가 변동 그래프]



1. 한국거래소 심의분석 결과, 위 주식매수청구기간 동안의 모직 주가 부양 효과가 물산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어상관관계가 높음(상관계수 0.95)으로, 물산 주가 상승은 물산 자체의 실적, 매수가격 이상으로 주가가 방어된다가, 모직매수기간 종료 후 차사주 집중 매입의 영향이 물산에 미치지 않았던 기간(2015.07.17~08.06)을 제외하고 상관관계가 높음(상관계수 0.95)으로, 물산은 주가 상승이 물산 자체의 실적에 따른 것임을 시사함

2. 업무상 비밀이해충 위험관리책, 업무상 소액

○ '15 주-기 중기방식으로 운영되는 물산의 인사물산, 물산과 모직의 인원은 보충역의 할 실물산 실력'이 있음에도, 인력관리 차이에 따라 모직, 물산이 주주들에게 불리한 입장을 설명하지 않음, 필요성, 합법적성, 시정의 권위성, 합법 의 대한 필요 권역, 권위성의 활용'으로써,

- 상대방인 모직(비대주주 이해충)에 물산과 권자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이익을 취하게 하고, 물산 및 모직물산에 물산 기업가치가 반영된 적절한 합병 대가분 받을 수 있는 기회가격 및 주주가격, 물산, 기회, 상설의 재산상 손익'이 가함

※ 본보고서 작성 시점 기준 삼성물산(000000)은 2015년 7월 23일 15:00, 재일모직(000000)은 2015년 7월 23일 15:00에 각각 57,234원, 56,493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본보고서 작성 시점 기준 삼성물산(000000)은 2015년 7월 23일 15:00, 재일모직(000000)은 2015년 7월 23일 15:00에 각각 57,234원, 56,493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3. 외부감사법상 거짓공시 및 분식회계 (이재용, 미래전략실, 로직스 소속)

○ ('14년 거짓공시) '15. 3. 로직스의 '14년도 재무제표 주석에, 모회사인 모직의 주가 등에 악영향을 주어 합병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바이오젠⁶⁾이 보유하고 있는 콜옵션 권리 등 지배력 관련 합작계약의 주요사항(콜옵션⁷⁾ 행사가격·만기, 주요 의사결정 동의권, 주총의결 52% 요건 등)을 은폐하여 거짓공시

* 바이오젠이 보유하던 콜옵션 및 동의권, 52% 주총의결권 조항 등은 로직스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으로 공시 필요

○ ('15년 분식회계) '16. 3. 로직스의 '15년도 재무제표에, 콜옵션 부채(1.8조원) 계상 으로 인한 자본잠식 모면, 불공정 합병 논란 회피를 위해, 자회사인 에피스에 대한 지배구조가 '15년에 변동되어 지배력⁸⁾을 상실하였다며 기존의 연결회계⁹⁾ 처리를 지분법으로 변경함으로써, 에피스 투자주식을 재평가¹⁰⁾하여 4.5조 원 상당 자산을 과다 계상

[로직스가 실제 수행한 2012년~2017년 회계처리]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회계처리	연결	연결	연결	지분법	지분법	지분법
콜옵션	고려 X	고려 X	고려 X	고려 O	고려 O	고려 O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실질지배력 有	실질지배력 有	실질지배력 有	지배력 상실 실질지배력 無	실질지배력 無	실질지배력 無
자산/부채 비율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4. 국정농단 사건 재판 위증 (김종중, 김신)

○ '17. 6. 특검의 '이재용 등 뇌물공여 사건' 공판에서 '합병은 이재용 경영권 승계와 관련 없다', '미전실은 합병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거짓 증언하는 등 실제 합병 목적·경위 등에 대해 위증

6)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바이오의약품 전문 다국적 제약사. 로직스는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 회사인 에피스를 설립 하면서 사업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바이오젠과 합작계약을 체결(콜옵션 부여)

7) 콜옵션은 미리 정해진 만기 내 특정 행사가격으로 특정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콜옵션 의무를 부담하는 회사는 회계상 부채로 정리

8) 회계상 지배력(실질적 지배력)은 명목 지분을 이외 콜옵션, 동의권 등 주주간 권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권리 행사 전이라도(실제 권리 행사와 상관없이) 객관적 행사능력 유무를 기준으로 지배력 판단(K-IFRS §1110호 등)

9) 타회사에 대한 지분 50% 초과 보유 등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경우 하나의 회사로 보고 연결회계 적용(모회사-자회사 관계),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20% 이상 50% 이하 보유 등)에는 지분법 회계 적용

10) 회계기준 상 투자주식에 대한 지배력이 변동될 경우 자산을 공정가치(시가)로 재평가 가능

④ 수사결과 확인된 합병의 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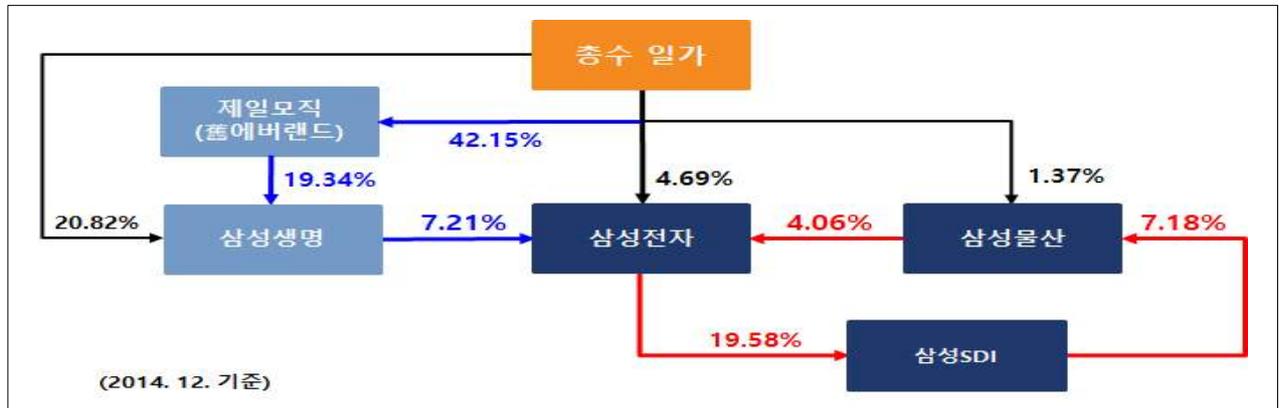
1. 합병 관련 주요 경과

- '12. 12. 이재용 부회장 승진, 프로젝트-G 승계계획안 완성
- '13.~'14. 4. 프로젝트-G에 따른 에버랜드 사업조정(舊 제일모직 패션사업 양수,레이크사이드 인수 등)
- '14. 5. 10. 이건희 회장 와병
- '14. 12. 제일모직(舊 에버랜드, '14. 7. 사명 변경) 상장
- '15. 3. 로직스, 바이오젠 합작계약(콜옵션)의 중요사항 거짓공시
- '15. 5.~9. 제일모직, 삼성물산 흡수합병(합병비율 1:0.35)
- '16. 3. 로직스, 에피스 지배력 변경·자산 재평가 분식회계
- '17. 4. 금감원, 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감리 개시
- '17. 6.~7. 김종중·김신,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위증 범행
- '18. 5.~8. 금감원 감리결과 통지(5. 1. 검찰 고발 예고) → 증거인멸 범행
- '18. 11. 금융위, 로직스 '15년 분식회계 검찰 고발 → 검찰 본격 수사

2. 합병의 배경 및 동기 : 최소비용에 의한 '승계작업'으로서의 합병

- 삼성그룹 지배권은 삼성전자(계열사 전체 시가총액의 2/3 차지)에 대한 지배력 확보가 핵심으로, 미전실은 총수의 그룹 경영지배권 행사를 보좌하며 이재용의 '최소비용에 의한 지배권 확보'라는 '승계작업'을 지원
- '15년 합병 이전, 이재용 등 총수 일가는 금산결합과 순환출자에 의존하여 전자를 지배하는 불안한 지배구조 형성(직접 보유 지분으로는 지배력 유지 부족)
 - 구체적으로는, 총수 일가의 전자 지분(①, 4.69%)에 더하여, 에버랜드를 통한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②, 7.21%)과 순환출자를 통한 삼성물산의 전자 지분(③, 4.06%)을 합쳐, 3개의 축을 토대로 그룹의 전자 지배력(총 16%)을 유지

* [①직접보유] 총수일가 → 삼성전자(4.69%) / [②금산결합] 이재용 → 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7.21%) / [③순환출자] 삼성전자 → SDI → 삼성물산 → 삼성전자(4.06%)



- 이재용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인수 등으로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 (㉒) 축은 확보하였으나¹¹⁾,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이 전혀 없었기에 순환출자를 통해서만 '삼성물산→삼성전자' (㉓) 축을 확보할 수 있었음
 - 또한, 직접보유 (㉑) 축도 대부분 이건희 회장 지분으로, 이재용이 이를 인수하려면 막대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등 지분 유지가 쉽지 않았고,
 - 전자의 2대주주인 물산에 대한 그룹 지분이 취약(이건희 1.37%, 이재용 0%)한 점도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였음
- 이런 상황 속에 '11.~'12. 경제민주화 여론과 대선 공약으로 금산분리, 순환출자,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 강화가 현실화되자, 미전실은 이재용 승계를 위한 에버랜드 중심의 승계 계획(프로젝트-G)을 수립하였고, 그 핵심이 '에버랜드 상장 후 삼성물산과 합병 계획'인 사실 확인
- 미전실은 '13년부터 계획대로 '이재용 승계작업'을 진행하던 중 '14. 5. 이건희 회장의 와병으로 상황이 급변하게 되자, 긴급히 계획을 앞당겨 우선 '에버랜드 상장'을 추진하여 '14. 12. 완료하였고,
- '15. 상반기에 모직의 주가가 높게 형성되고 물산 주가는 하락하여 주가 기준으로 합병비율이 모직에 유리하게 형성되자, 위 승계 계획(프로젝트-G)에 따라 이재용과 미전실이 '15. 3.~4. 다음 단계인 '에버랜드의 물산 흡수합병'을 전격 실행한 것이 이 사건 합병의 실제 배경이자 동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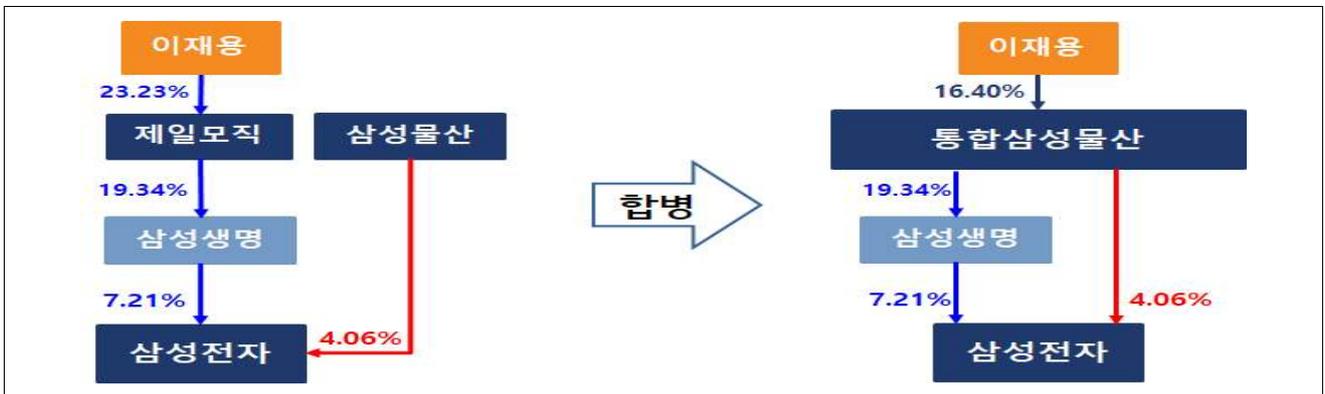
11) 이재용은 '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인수로 에버랜드 지배권을 확보하였고, 이후 에버랜드는 '97~'98년 삼성생명 주식을 저가 인수하여 삼성생명의 최대주주 지위를 획득하였음

3. 합병시점의 결정 및 합병 결과 : 이재용에게 유리한 시점의 합병 추진

○ 이 사건 합병은 주가를 기준으로 1:0.35(모직:물산)의 합병비율로 신주가 교환되었는바, 그 결과 물산 지분이 없던 이재용은 통합 물산의 16.4% 지분을 확보하여 최대주주가 되었고, 이로써 물산이 보유한 전자 지분 4.06% (당시 시가 8조 원)의 지배력도 확보하여 그룹 지배권을 공고히 하게 됨

* 합병거래의 핵심 요소는 합병비율(소멸회사 주주들이 합병사 신주를 교환받는 비율)로서, 현재 법령은 합병계약일(이사회) 기준으로 최근 1개월, 1주일, 직전일의 주가를 산술평균하여 10% 할인 또는 할증한 범위에서 합병비율을 결정

[이 사건 합병 전후 지배구조 변동]



○ '15. 5. 당시 물산은 모직에 비해 매출액 5.5배, 영업이익 및 총자산 3배에 이르는 규모였음에도 주가는 오히려 모직이 물산보다 2.6배 높아서, '주가 기준의 합병비율'은 이재용 등 모직 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물산 주주에게는 불리하였는바, 물산 주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었음

○ 수사 결과, 물산 경영진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회사와 주주에게 극도로 불리한 시점의 합병을 강행하였는바, 그 이유가 합병이 이재용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한 치밀한 계획 하에 미전실의 독단적 지시로 이루어졌기 때문임을 명확히 확인함

- 미전실은 처음부터 이재용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이 조성되도록, 모직 상장 후 모직 주가가 높게 형성된 시점에 물산 합병을 계획하였고, '14. 12. 상장 이후 지속적으로 주가를 점검하며 모직 주가는 높고 물산 주가는 가장 낮은 시점을 정해 승계 계획(프로젝트-G)대로 '물산 합병'을 실행한 것임

* 합병 결과, 이재용은 통합 물산 지분 16.4%와 전자 지배력까지 확보하여 이익을 얻었으나, 물산 주주들은 합병 후 지분이 1/3로 축소되었고, 합병 직후 194,000원이던 물산 주가의 지속적 하락('20. 7. 31. 기준 106,000원)으로 합병 이전부터 주식을 보유한 물산 주주들은 모두 30~50% 상당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상황임

4. 합병 과정의 조직적 부정거래행위 : 이재용을 위한 무리한 합병 성사

- '15. 5. 26. 합병 공표 이후 불리한 합병비율·시점에 물산 주주 반발 심화
 - 특히, '15. 6. 4. 엘리엇이 물산 지분 7.12% 보유사실을 공시하고, 해외주주(33%), 소수·소액주주(24%) 다수의 반대 입장이 확인되자, 이재용이 직접 미전실, 해외 자문사와 함께 긴급 대응전략 수립 사실 확인
- 이후 위 대응전략에 따라 거짓 정보 유포, 투자위험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증권사 PB 조직 동원 등 조직적 부정거래행위로 주주 의결권 확보하여 주총 통과
 - * 7. 17. 주주총회 당일 주주들 간 격론이 오갔으며, **2.86%의 근소한 차이로** 합병 안건 통과
→ 투자자 판단을 방해한 **각종 부정거래행위가 없었다면 합병 무산 가능성 농후**
- 또한, 주총 이후 주가가 하락하자 물산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억제할 목적으로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도 감행하였는바,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합병이었기에 미전실 등 그룹이 총동원되어 합병 성사를 위한 각종 불법·부정행위가 자행된 사실 확인

5. 합병 관련 공표 내용의 허위성

- 삼성은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합병 당시부터 지금까지, '본건 합병은 이재용 승계와 무관하고 미전실이 관여한 바 없으며, 계열사의 경영상 판단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대외 공표
 - * 2018도13792(전합) : 본건 합병은 미래전략실 중심으로 조직적 진행한 승계작업의 일환, 승계 작업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전자, 삼성생명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그룹 지배구조 개편임
- 확보된 삼성 내부 문건·이메일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합병의 목적, 경위, 시점, 합병비율, 효과 등의 실체를 확인한 결과, 그 동안 합병 관련 거짓 정보들을 공표하여 투자자를 기망한 사실 확인

	삼성 측 공표 내용	수사 결과(실체)
합병목적	▶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등과 무관함 ▶ 물산의 성장 정체 및 어려운 경영환경의 타개책 마련(회사의 경영 판단)	▶ 이재용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 목적 ▶ 회사의 경영 판단 및 물산 주주 이익 고려 없었음
합병경위	▶ 이재용 및 미전실은 전혀 관여하지 않음 ▶ '15. 4. 모직 CEO의 先제안으로 물산 경영진이 신중히 검토하여 합병 결정	▶ '12년부터 미전실이 합병계획(프로젝트-G) 마련 ▶ '15. 4. 미전실이 구체적 합병 추진안 마련하여 모직·물산 양사에 합병 실행 지시
합병시점	▶ 이재용 및 미전실의 관여사실 없음 ▶ 계열사(모직·물산)에서 적절한 합병시점 검토, 선정	▶ 이재용과 미전실은 이재용에게 유리한 시점을 정하여 전단적으로 합병 결정 ▶ 미전실이 '14. 12. 모직 상장 후 주가 및 예상 합병비율, 이재용 지분율 점검하여 합병시점 결정
합병비율	▶ 이재용의 유불리는 고려되지 않았음 ▶ 법률에 의해 주가로 정한 합병비율이므로 합병비율은 정당함	▶ 주가 추이에 따라 이재용에게 유리한 시점에 합병 결정 → 이재용에게 유리한 합병비율 결정 ▶ 법상 할인할증(±10%)으로 합병비율 조정이 가능했음에도 물산 이사회는 검토한 바 없음
합병효과	▶ 합병효과(시너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판단 ▶ '20년 60조 원의 매출이 예상됨	▶ 합병 발표 전 제대로 된 시너지 검토 없었음 ▶ 합병 발표 후 의결권 확보 위해 시너지 수치 조작 ▶ '20년 현재 매출 30조 원에 불과(합병 전과 동일)

5 사건의 특징

1. 중대한 자본시장 교란행위

-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한 공정한 경쟁 촉진,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하므로(자본시장법 제1조), 회사는 시장과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충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독립적으로 투자자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해야 할 임무가 있음
- 그런데, 이 사건 합병은 '최소비용에 의한 승계 및 지배력 강화'라는 총수의 사익을 위해 미전실 지시로 전단적으로 실행되며 투자자의 이익은 무시하고 기망한 것으로,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한 조직적인 자본시장질서 교란행위로서 중대 범죄임
 - *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이사회 의결',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식매수청구권' 등 합병 단계별 주주(투자자) 보호 제도들을¹²⁾ 모두 무력화·형해화시킨 것임
- 기업집단의 조직적 금융 범죄에 대해 예외 없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 및 국내 자본시장의 신인도와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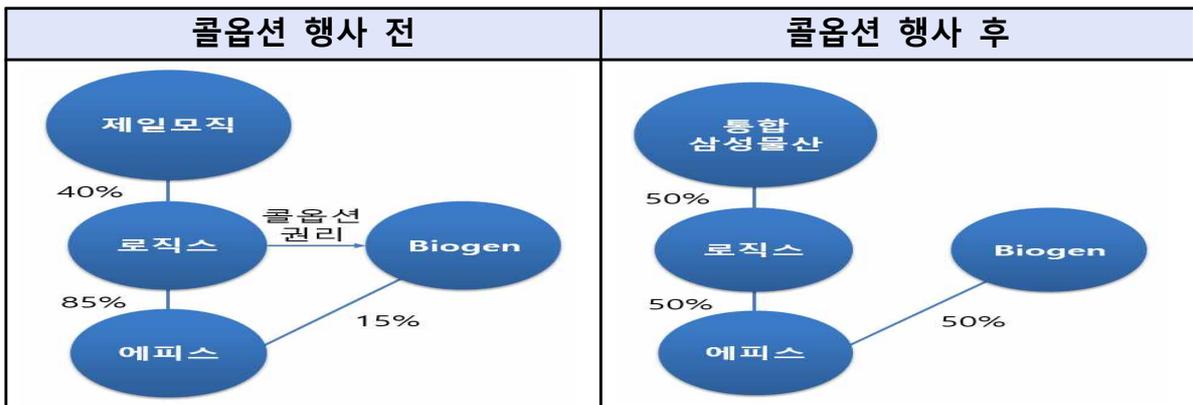
12) 회사의 이사회는 주주 이익을 고려하여 합병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위하여 주주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합병 반대 주주들은 주가 추이에 따라 정해진 행사가격에 회사가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합병을 추진해도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예상보다 많으면 합병은 무산됨

2. 불법합병 은폐를 위한 계열사의 회계부정

○ ('14년 거짓공시) 로직스는 '11년 바이오젠과 에피스 합작계약을 맺으며 바이오젠이 원하면 언제든지 50%-1주까지 에피스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다가 '15. 3. 재무제표 주석에 주요 합작계약 내용은 모두 은폐한 채 콜옵션의 존재사실만 공시

- 주석에는 '바이오젠이 49.9% 상당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가지고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그 외 합작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은폐함으로써, 투자자들로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여부와는 상관없이 로직스가 에피스를 단독 지배하는 것으로 오인 가능

* 로직스는 바이오젠과 '11. 12. 에피스를 합작 설립(로직스:바이오젠=85:15)하면서, 합작계약으로 바이오젠에게 콜옵션(50%-1주까지 취득 가능) 및 제품개발 동의권 등 부여, 주총 의결권 가중조항(52%) 등을 규정하였는바, 회계기준상 콜옵션, 동의권, 52% 주총 의결권 조항 등에 의해 로직스는 처음부터 에피스에 대한 단독 지배력이 없는 상황



- 수사 결과, 콜옵션 및 동의권, 52% 주총의결권 조항 등 로직스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공개되면 로직스가 에피스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로직스의 모회사인 모직의 주가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거짓공시를 한 사실 확인

○ ('15년 분식회계) '15. 8~9. 모직은 합병 회계처리 과정에서 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1:0.35)을 정당화하기 위해 모직의 가치를 높이고자 모직 자회사인 바이오 계열사(로직스, 에피스) 가치를 부풀려 평가하였고, 그 결과 로직스 재무제표에 부채로 반영해야 하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의 가치도 대폭 증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 로직스 입장에서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콜옵션은, 바이오젠이 행사가격을 지불하고 옵션을 행사하였을 때 에피스 지분 가치가 행사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매도할 수밖에 없는 의무인바, 로직스는 그 차이만큼을 재무제표에 부채로 반영해야 함

- 미전실은 콜옵션 부채로 인해 로직스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자산<부채)에 빠지게 되자, 어렵게 성사된 합병에 대해 다시 불공정 논란이 제기될 것을 우려하여 자본잠식을 탈피하고자 자산을 부풀리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회계 기준을 위반하여 자의적으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 감행
- 회계기준에 의하면, 콜옵션, 동의권 등 바이오젠의 권리는 지배력 판단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12년 이래 로직스의 에피스에 대한 지배구조가 변동된 바 없고, 로직스는 에피스 설립 당시부터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지배력 상실 처리 및 에피스 투자주식 재평가 불가

【 로직스/바이오젠의 지분율 및 합작계약서상 각종 권리 현황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분율 로직스 大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바이오젠 콜옵션 有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주총의결 52% 要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바이오젠 동의권 有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 '12~'17년 실질지배력 변동 요인 無					

- 결국, 미전실 및 로직스는 불법합병을 은폐하고 완전 자본잠식을 모면하기 위하여 회계기준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에피스 투자주식(자산)을 4.5조 원 상당 과다 계상하는 분식회계를 자행한 것임

3.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실체 은폐를 위한 조직적인 사법방해

- '17. 6.~7.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승계작업'과 '합병'의 실체가 문제되자 미전실 전략팀장, 물산 대표 등은 각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정한 합병의 목적·경위 등을 거짓 증언함으로써 그 실체를 은폐
- '18. 5.~8. 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금감원 감리 이후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의 실체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미래전략실의 후신인 사업지원TF를 중심으로 대규모 증거인멸 범행을 감행

- * 수사팀은 '19. 5.~6. 사업지원TF 임직원 등 8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하여 1심에서 전부 유죄가 선고되었음
- * 당시 사업지원TF는 로직스·에피스에 지시하여 「VIP, JY, 부회장, 미전실, 사업지원TF, 합병, 바이오젠, 콜옵션, JVA, 상장, IPO, 나스닥, 감리, 지분매입」¹³⁾ 등의 검색 키워드로 2015년 합병 및 회계처리 당시 자료를 중점적으로 인멸, 은닉하였는바, 키워드 내용만 보아도 삼성이 은폐하고자 했던 자료가 어떤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있으며, 결국 이 사건 불법합병과 회계부정의 실체를 은폐하고자 한 것임

- 결국 이 사건 수사결과는 금융위 고발로 '빙산의 일각(회계부정)'에서 출발한 검찰 수사가 단서를 차근차근 찾아가며 수면 아래 감춰진 '빙산(불법합병)'의 실체 및 이를 감추기 위한 조직적 사법방해 범행들을 밝혀낸 것임

6]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권고 관련

1. 개요

- 6. 26.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심의를 신청한 이재용, 김종중, 물산 등 3명에 대하여 수사팀에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였으나, 불기소 권고의 이유와 근거는 공개하지 않음
- 이후 수사팀은 심의위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고 숙고하여, 현재까지 수사 내용과 관련 법리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며 수사상황 전반을 점검

2. 심의위 이후 각계 전문가 의견 등 청취

- 심의위 제도의 취지는 사회 각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수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인바, 금융·회계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본시장법 등 관련 전문가 의견을 추가 청취한 다음 심의위 권고를 종합하여 사건 처리
- 수사팀과 견해를 달리하는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30여 명 상당의 외부 법률·금융·경영·회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의견 청취 과정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록·정리하였음

13) JY는 '이재용', JVA(Joint Venture Agreement)는 '(바이오젠과의) 합작계약서'를 의미

- 상법·자본시장법 및 경영·회계학 전공 교수들의 의견에 따라, 미전실 및 물산 경영진들이 합병 과정에서 물산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위배한 점을 배임 행위로 의율하였고, 기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적극 반영

주제	의견 요지
불법합병 (상법·자본시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들이 회사나 주주들의 이익이 아니라 그룹 총수 이익을 위한 합병임을 명확히 알면서 찬성 결의 → 선관의무·충실의무 위반에 해당 ▶자본시장법 제178조 1항 1호(부정한 수단·계획·기교 사용)는 포괄금지규정으로 도입된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사안에 적용하는 것이 적정 ▶자사주의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종 구성요건 해당하면 시세조종 범행 성립
회계부정 (외부감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회계기준이 '원칙 중심 회계'라 하더라도 회계방식 임의선택은 불가 ▶모직-물산 합병 사후처리를 위한 고의적 분식회계에 해당
총수처벌과 기업경영·국가경제 영향력 등	▶총수들이 유죄 선고된 35개 기업, 319개 계열사들 분석 결과, 총수 검찰 수사/기소/유죄선고는 기업 주가, 경영, 국가경제에 별다른 영향 없음

- 또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금융수사 등 풍부한 수사경험을 가진 **부장 검사들의 논의를 거쳐 내부 의견 수렴**

* 부장검사회의 참석자들은 1주일에 걸쳐 범죄사실을 비롯한 1,200쪽 이상의 주요 수사 기록을 사전에 검토하고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와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일치된 의견을 제시

- **내·외부 의견 청취 결과**, △기업집단의 조직적인 자본시장질서 교란 범행으로 사안 중대한 점,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는 실체가 명확한 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총수 이익을 위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무시한 배임 행위의 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 등 종합하여, **주요 책임자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는 결론

* 심의위 이전 구속영장 재판을 심리한 영장전담 판사는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실시하였는바, 기각 결정 취지가 '피고인들의 책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인 점도 참고

- 다만, 최종적인 수사결과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부 기소 범위를 조정하는 등 심의위의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사건을 처리함 ☐

■ **별첨 : 피고인 이재용 주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이재용 주요 공소사실 요지

연번	죄명	소제목	공소사실 요지	공범
1	자본 시장법 위반	[이사회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 이재용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 12.경 '에버랜드(이재용이 최대주주) 상장 후 물산 합병 방안' 등 포함된 종합적 승계계획안 수립 - '14. 5. 이견희 회장 와병 이후 모직(舊 에버랜드) 상장 긴급 추진하여 '14. 12. 완료 - 이재용과 미전실은 모직, 물산 주가 추이를 살피던 중 '15. 3.~4.경 모직에 유리한 주가 형성되자, 전단적 합병 추진 결정 및 구체적 합병 추진안 마련 - '15. 5. 이재용과 미전실의 결정·지시에 따라 물산 합병 TF 구성, 합병 정당화를 위한 허위 명분과 논리 마련(합병 시너지 효과 및 수치, 허위의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보고서 마련) ○ (형식적 이사회 결의·합병계약 체결 후 허위 내용 합병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5. 25. 물산 사외이사들에게 이사회 개최로부터 불과 12시간 전에 이사회 소집 사실 통지 - '15. 5. 26. 합병 목적, 추진 배경, 기대 효과 등 허위로 가장한 설명자료를 사외이사들에게 제공 - 합병비율 적정성, 합병 타당성, 물산주주이익보호 등 검토 없이 1시간 만에 형식적 이사회 결의, 합병계약 체결 - 이사회 직후 합병 공표하면서 증권신고서 등 공시자료, 보도 자료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합병의 배경, 경위, 효과 관련 허위 정보 유포 	최지성, 김종중, BOO, 최치훈, 김신, 이영호
2		[주주총회 단계] 의결권 확보 목적 물산 자기주식 전격 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 합병 성사를 위한 긴급 대응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 공표 이후 합병비율과 시너지 효과 등 관련 국내외 비판 및 엘리엇 등 주주 반대 본격화 - 특히 엘리엇은 '15. 6. 4. 물산 주식 7.12% 보유사실을 공시하며 합병조건 불공정성을 이유로 합병에 반대, 합병 무산 가능성 언급 기사들 다수 보도 - 이재용과 미전실은 골드만삭스 미국 본사 IB부문 회장과 대응방안 논의, 삼성증권 IB본부, 물산 합병 TF에 지시하여 합병 성사를 위한 긴급 대응전략 수립 ○ (물산의 경영상 필요와는 무관하게,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모직 2대주주 KCC에 물산 자사주 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의 자기주식(자사주)은 의결권이 없으나 처분할 경우 의결권이 부활하므로, 주주총회를 앞두고 우호세력의 확보 위해 특정 제3자에게 자사주 매각 시, 주주들의 이익과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침 - '15. 6.경 물산의 경영상 필요에 대한 검토 없이 오로지 합병 의결권 확보만을 위하여, 물산 자기주식 890만주(5.76%)를 이해가 상충되는 합병 상대방인 모직의 2대 주주 KCC에 매각 - 그 과정에서 공시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 '장외거래' 방식을 이용하여 물산 주주의 매입 기회 차단, KCC에는 경제적 이익 약속, 매각 경위 관련 허위 정보 유포 	최지성, 김종중, BOO, 최치훈, 김신, 이영호

3		<p>[주주총회 단계] 투자위험 정보의 은폐 및 가장</p>	<p>○ (자회사 에피스에 대한 지배권 제약사항 은폐·가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직스-바이오젠 사이의 에피스 합작계약서에는 ① 에피스의 주요 경영활동에 대한 사전 동의권, ② 행사기한 내에 언제든지 행사하여 로직스로부터 에피스 지분을 50%까지 매입 가능한 콜옵션, ③ 52%로 가중된 주주총회 의결요건 등 포함 - 이는 에피스 지분을 보유한 로직스와 모직의 지분가치, 주가 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투자자들에게 충실히 알려야 할 정보임 - '15. 5.~7.경 바이오 사업의 성장성(합병 시너지)을 홍보하면서, 바이오젠의 에피스 지분 50%에 대한 콜옵션, 주요 경영활동에 대한 사전 동의권, 25%로 가중된 주주총회 의결요건 규정 등 지배권 제약사항 은폐·가장 <p>○ (본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발생 투자위험 허위공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순환출자 발생 효과는 합병등기 시 바로 발생하므로 그로부터 6개월 내인 '16. 3. 1.까지 신규 순환출자에 해당하는 지분을 전부 처분해야 하는 법적 의무 부과 - 이는 모직과 물산의 지배 구도, 양사의 재무적 부담 등과 관련되어 있고, 그 해소를 위해 해당 주식 대량 매각시 주가하락 위험 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충실히 알려야 할 정보임 - '15. 5.~7.경 본건 합병으로 발생하는 최대 2.3조 원 규모의 순환출자 및 이에 따른 합병법인 주식 대량 처분 의무 발생 위험 은폐·가장 <p>○ (모직의 주요 자산인 삼성생명 지분매각 추진 관련 허위공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 5.경부터 상속세 마련 등을 위해 골드만삭스와 함께 삼성생명 지분 매각 추진 착수, '15. 2.경 인수 협상자로 버크셔 해서웨이를 후보로 정하고 구체적 협상 추진 - '15. 5.~7. 삼성생명을 사업회사(생명보험사업, 삼성전자 지분 보유), 지주회사(기타 금융 계열사 지분 보유)로 인적분할한 후, 버크셔 해서웨이에 사업회사를 매각하는 방안을 구체적 논의 하였으므로, 위 거래 추진 사실, 그 진행 경과 등은 투자자들에게 충실히 알려야 할 정보임 - 그럼에도 본건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 등에, 삼성생명의 지주회사 전환 및 지분 매각 등 정보를 알리지 않고, 모직이 삼성생명 지분 처분 없이 계속 보유하는 것처럼 기재하여 가장 	<p>최지성, 김중중, BOO</p>
4		<p>[주주총회 단계] 합병 목적·경과·효과 등 합병 관련 허위정보 유포</p>	<p>○ (계획 : 허위 명분을 이용한 투자자 접촉 및 설명자료 배포 등 방안 마련) '15. 5.~7.경 합병 목적·경과·효과, 합병비율의 적정성 검토 등 주주들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 명분·논리 개발 및 배포 방안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 합병 목적 : 이재용 승계 및 지배력 강화와 전혀 무관하고, 오로지 양사의 경영상 필요를 목적으로 결정 - 허위 합병 경과 : 모직-물산 CEO가 만나 추진 결정, 그 과정에서 이재용, 미전실의 관여 없었음 - 허위 합병 효과 : 시너지 창출로 '20. 예상 매출액 60조 원, 순환출자 줄어 지배구조 단순화 - 허위 합병비율 적정성 :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 딜로이트안진의 기업가치평가 결과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 <p>○ (해외 주주 및 의결권 자문사 접촉을 통한 허위정보 유포) '15. 5.~7.경 물산의 주요 해외 기관 주주(2대주주 블랙록, 3대주주 메이슨캐피탈 등) 및 세계 1위 의결권 자문사 ISS 등과 회의 등으로 접촉하여, 위와 같이 개발한 허위 명분·논리 유포</p>	<p>최지성, 장충기, 김중중, BOO, 최치훈, 김신, 이영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설명자료 등 배포 및 공시 등을 통한 허위정보 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5.~7.경 허위 명분·논리 관련 주주설명자료, 주주통신문 등을 마련하여 합병 홍보용 홈페이지에 수시 게시하고, 해외 주주 및 ISS 등 의결권 자문사 등에 지속적 발송 - 물산 주주들을 상대로 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과정에서, 허위 내용 기재 참고서류를 금융위원회, 거래소에 제출함과 동시에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등 ○ (금융투자업자의 분석보고서 작성 과정에 개입, 내용 왜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6.경 한화투자증권의 합병에 불리한 애널리스트 보고서 발표 이후, 한화그룹 측에 '합병에 불리한 보고서를 발표하지 말아 달라'라고 압박하는 등 개입 시도하였으나, 그 무렵 합병 성사에 불리한 투자정보가 연이어 발표된 상황 - '15. 7.경 한국투자증권의 합병 관련 애널리스트 보고서 초안을 입수한 후, 합병 성사에 불리한 내용은 제외하고 합병 성사에 유리한 내용만 반영하여 발표하도록 개입, 왜곡 ○ (투자자 의사결정을 왜곡하기 위한 의도적 여론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6.경 ① 엘리엇을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여 엘리엇에 대한 반감 적극 유발, ② 본건 합병의 구도를 삼성과 엘리엇의 선악 대결처럼 왜곡함으로써 합병의 문제점 은폐, ③ 조작된 합병 시너지 효과 기사화 등 여론 및 투자자 의사결정 왜곡 위한 언론대응 방안 마련 - '15. 6.~7.경 삼성그룹의 경제적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언론 기고문을 대신 작성한 다음 경제계 저명인사에게 전달 하여 기고문 취지대로 인터뷰하도록 하는 등 합병에 우호적인 언론보도 유도 	
5		[주주총회 단계] 인위적 주가부양을 위한 허위호재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회사 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계획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6. 하순경까지 에피스 상장의 선결조건(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및 에피스 지분 재매입 방안)에 대해 합작사인 바이오젠과 구체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음 - 그럼에도 '15. 6. 하순~7.경 모직 주가의 인위적 부양을 목적으로, 언론홍보, 기업설명회,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에피스가 바이오젠과 협의를 마치고 곧바로 상장을 추진하여 2016년 상반기 중 상장될 것처럼 허위사실 공표 ○ (용인 에버랜드 관련 허위 개발계획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인 에버랜드 개발계획은 모직이 검토를 시작한 '03.경부터 오랫동안 구체적 사업성 검토가 없고, 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안도 마련되지 않아 어떠한 진척도 없이 중단된 상태였음 - 그럼에도 '15. 6. 하순경 모직 주가의 인위적 부양을 목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한 용인 에버랜드 개발을 마치 사업·자금조달 계획이 구체화되어 곧바로 실현될 것처럼 적극 홍보하여 허위사실 공표 	최지성, 김종중, BOO
6		[주주총회 단계] 국민연금 상대 허위 정보 제공, 대통령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 설명자료 등 제공, 대통령 로비 통해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 유도하여 국민연금 찬성 의결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6.~7.경 국민연금(물산, 전자의 최대주주)에 합병 관련 허위 설명자료, 조작된 합병비율 검토보고서, 시너지 효과 조작 회의자료 등 제공 - 전문위원회 위원,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상대로 합병 찬성 청탁 - 대통령의 사적 요구사항(최서원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에 대한 이행의사 적시 전달 통해 대통령의 부당한 개입 유도 	최지성, 장충기, 김종중, BOO

7		<p>[주주총회 단계] 일반 소수·소액 주주에 대한 부정한 의결권 확보 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성신약 상대 의결권 확보 목적 대규모 이익 제공 제안) '15. 6.~7.경 일성신약(물산주식 2.37% 보유한 주요 일반주주)이 합병 반대 가능성 언급하자, 회사 건물 신축, 지분 고가 매수 등 은밀하게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안하면서 다른 주주에게 이를 숨기는 등 차별 대응 ○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삼성증권 리테일 조직 동원하여, 물산 주주 등 개인정보 유용 등 통한 소수·소액주주 의결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6.~7.경 모직 자문사로서 물산 주주들과 이해상충되는 삼성증권 리테일 조직 등 동원하여, 통상적인 투자 상담인 것처럼 가장하도록 하여 물산 주주 의결권 확보 - 물산 주주, 삼성증권의 고객정보를 고객들의 사전동의 없이 상호 공유하여 개인정보 유용을 통해 물산 주주 의결권 확보 	<p>최지성, 김종중, BOO, 김신</p>
8		<p>[주주총회 이후 단계] 주식매수청구 억제를 위한 인위적 주가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 주식매수청구 억제를 위한 인위적 주가관리 계획 수립) 주식매수청구대금 합계 1.5조 초과시 합병 해제 사유인바, '15. 7. 17. 주총 이후 모직, 물산 주가 모두 하락세로 주식매수 가격(물산 57,234원, 모직 156,493원)에 근접하자, 합병 성사를 위해 양사 주가 인위적 부양 계획 수립 ○ (에피스 상장 제안요청서 발송을 통한 부정하락 방어) '15. 7.경 에피스 상장의 선결 조건(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에피스 지분 매입)에 대해 바이오젠과 구체적 협의가 없었음에도, 에피스 상장 기대감을 높여 양사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상장 주간사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골드만삭스 등 8개 글로벌IB에 송부하여, 투자자들의 오해 유발 ○ (주식매수청구기간 중 모직 자사주 집중매입 시세조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7.~8.경 동조 효과(합병비율 고정으로 모직 주가가 상승하면 물산 주가도 동반 상승)를 이용한 물산 주가부양 목적으로, 경영상 필요성이 없는 모직 자기주식 매입 결정 * 물산 주가부양이 시급하였으나, 물산은 이미 자사주 전량을 KCC에 처분한 관계로 3개월 동안 자사주 취득 불가(자본시장법) - '주가 부양을 통한 반대매수청구 행사 최소화', '모직 주가 관리를 통해 물산 주가를 주식매수가격(57,234원) 이상으로 유지', '합병비율 등을 감안하여 모직 주가의 최저 목표가격을 17만원으로 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사주 매입전략 수립 - 물산 주식매수청구기간(10일) 동안 모직 자사주 집중매입 (172만주)함에 있어, 다수의 고가매수 주문(7,049회, 23만주)·물량소진 주문(13,185회, 54만주)·단주주문(14,075회, 12만주) 제출 등 시세조종 	<p>최지성, 김종중, BOO</p>
9	<p>업무상 배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4.~5.경 물산 및 물산 주주의 이익 보호 위해 합병의 사업적 타당성, 합병시점·합병비율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등의 충실·선관의무에 위배하여, 이재용과 미전실의 판단적 결정에 따라 합병 실행함으로써, 물산 및 물산 주주들에게 물산 기업가치가 반영된 적정한 합병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증대 기회 상실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 	<p>최지성, 김종중, BOO, 최치훈, 김신, 이영호</p>
10	<p>외부 감사법 위반</p>	<p>2014회계연도 로직스 재무제표 거짓공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3.경 2014회계연도 로직스 재무제표 주석에, 모회사인 모직이 물산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주가 등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여, 바이오젠이 로직스를 상대로 보유한 콜옵션 권리 등 지배력 관련 주요사항(콜옵션 행사가격·만기, 주총의결 52% 요건 등)을 은폐하고, 콜옵션 행사 후에도 로직스가 계속하여 과반 지분을 보유한다는 취지로 거짓공시 	<p>최지성, 김종중, AOO, BOO, 김태한, COO</p>
11		<p>2015회계연도 로직스 재무제표 회계분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 3.경 2015회계연도 로직스 재무제표에, 1.8조 상당의 콜옵션 부채 반영시 로직스 자본잠식 및 합병 불공정 논란 심화 우려하여, 마치 대외적인 사정 변경에 따라 지배력을 상실한 것처럼 거짓 회계처리(연결회계→지분법), 에피스 투자주식 재평가 실시하여 약 4.5조 원 상당 자산 과대 계상 	